

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지금까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7일에 집회하는데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9월·10월 중에 실시하는 것이 의회운영에 합리적임

2. 주요골자

-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①(결산심사)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.
-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7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9월·10월경에 실시하여 새로운 원 구성으로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(시행령 제19조의 4)

3. 검토의견

이번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7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선거로 새로운 원 구성을 하고 예산결산안의 승인을 보다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1차 정례회를 9월·10월경에 집회하는 것이 위민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의 책임 및 지방재정의 자원배분, 소득재분배, 경제성의 타당성과 합리성, 합법성, 결산심사를 병행 다음연도의 예산집행, 편성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,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